

# 소 장

원 고 정 ○ ○ (원 성명 김 ○ ○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

친권자 모 김 □ □

등록기준지 및 주소 : 원고와 같음

피 고 정 △ △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####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는 원고의 생모인 김□□과 소외 박□□ 사이에 출생한 모의 혼인외 출생자인데 생부인 소외 박□□가 인지를 하지 않아 생모인 친권자 위 김□□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성명은 김○○로 하여 모의 호적에 자로입적된 것입니다.
- 2. 피고는 원고가 출생하고 나서 원고의 생모와 관계를 맺은 사실도 있었으나, 두 사람 사이에는 태어난 자녀가 없었으며 결혼을 할만한 정신적, 경제적 여유 도 없었기에 원고의 생모와 피고는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.
- 3.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결혼을 요구하였고, 이에 원고의 생모는 결혼할 수 없음을 설득하던 중,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생부 부지중에 20〇〇. 〇. 〇. 원고의 본래 이름인 김〇〇의 성을 정〇〇로 정정하여 원고를 자신의 호적에 자로 입적하였습니다.
- 4. 따라서 위 입적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한 피고의 일방적인 허위의 사실에 기한 인지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62조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(원고)

1.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(원고)

1. 갑 제3호증 진술서(생모 김□□)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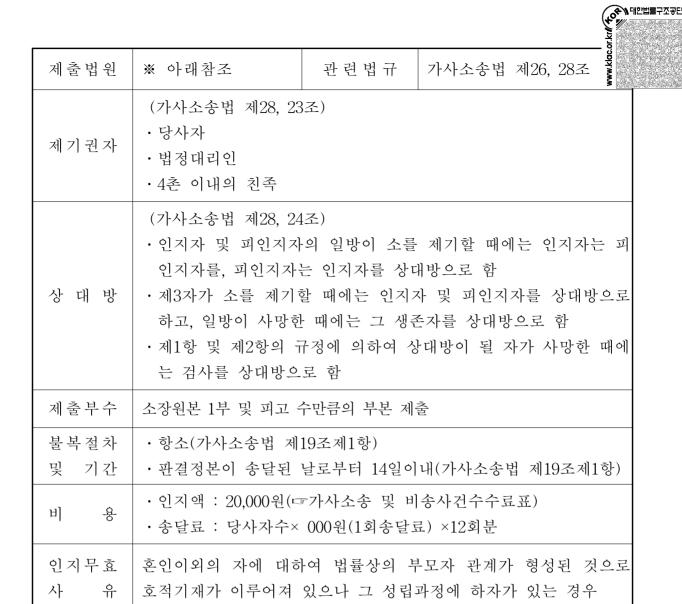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정 ○ ○의 친권자 모 김 □ □ (인)



#### ※ 제 출 법 원 (가사소송법 제26조)

- 1. 자(子)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
- 2. 자(子)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